

의안번호 제77호

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

제 출 자	구본선 의원 외 4명
발의연윌일	2020. 6. 15.

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

의 안 제77호

발의연월일: 2020. 6. 15.

대표발의자 : 구본선

공동발의자 : 이계천 서 원

김남충 최정숙

1. 제안이유

○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으로 10년이 경과된 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「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」를 제정 열악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 사용 승인 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정함(안 제2조)
- O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정함(안 제4조)
- O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22조
- 지방재정법 제17조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건축법』에 따라 건축허가 된 곳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소규모 공동주택"은 20세대 미만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하고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.
- 2. "관리주체" 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.
- 3. "관리단의 의결" 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.
 - 가.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된 사항
 - 나.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 합의된 사항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논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행정구역의 「건축법」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한다.
- 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) 논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원대상) 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·보수 등으로 한다. 다만,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정한다.
 - 1.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(노인정)의 보수와 개선
 - 2. 석축, 옹벽,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
 - 3. 소규모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유지 보수 사업
 - 4. 단지 내 도로와 가로(보안)등 및 하수도 보수와 개선
 - 5. 그 밖에 공동이용 시설 중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.
- 제6조(지원범위) ①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(이 하 "지원금" 이라 한다)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자체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
 - ③ 지원금을 지원받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.
- 제7조(지원신청)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매년 2월까지 각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으면 매년 3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「주택법」에 따른 「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」를 준용하여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④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대표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「논산시 건축 조례」에 따라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사업 내용을 감독할 수 있다.
- 제8조(지원금 교부신청) 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 추진 실적
 - 2. 사업비 정산서

- 3. 자체평가서
- 4. 증빙서류 영수증 및 현장 공사사진(전, 후)
- 5.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 완료확인서
- ②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.
- 제9조(목적 외 사용금지)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다.
 -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 - 1.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
 - 2.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
 - 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5.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- 제10조(지원결정의 취소)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)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상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, 그 사업을 중단,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2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『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와 『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』를 준용하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소관부서	성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구본선 의원 외 4인

[별지 제1호서식]

	소-	구모 등	공동	주택 곤	<u></u> 리 지	원금	급 신	청서			
	공동	주택명					동	수		<u> </u>	5
신청자	주	소		세대수			٨	네대			
		주자 의결일			준	공일					
			신	청	내	용	<u>}</u>				
구	분	개		요	총 예산	자체	예산	보조여	1산	비	고
계											

「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000 관리사무소장 (인)

논산시장 귀하

【구비서류】

- 1.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(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) 1부
- 2. 사업계획서 1부(사업목적, 사업내용, 사업비용 산출근거, 사업기간, 공사계획서, 장기수선계획서 사본)
- 3. 설계서 (견적서, 산출내역서) 1부
- 4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사 업 계 획 서

.

4	ı	L	Ы	명	
	١.	 Г	H	7	

2. 사업목적 :

3. **사업추진기간** : 년 월 일 ~ 월 일

사업시행예정일: . . . 사업완료예정일:

4. 사업내용

(사업추진경위. 추진방법, 추진할 내용 등 기술)

- 5. 사업효과
- 6. 사업비 산출내역 : 세부내역 견적서 첨부

(단위 : 천원)

사업구분	TI 초	·항목		금 액		산 출 내 역 비고
사비그문	시골	87	계	신청액	자부담	산 출 내 역 비고
	총	계				
	소	계				
	소	계				
	소	계				

논산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									
공동 주	택명								
주	소								
동	수				준 공	일			
세 대	수				연 락 (전화번호	•			
			신	<u> </u> 청	내	용			
공사구분	사업니	<u>개</u> 내용	요 착공일	완공일	i 계	소 요 0 지원: 신청9	금	<u>}</u> 자 체 부담액	지원금 결정 통 보 액
						L 0	'	1 11 1	
		711							
		계							

「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은 행 명	계 좌 번 호	예 금 주

년 월 일

신청인: (인)

논산시장 귀하

구비서류

- 1. 공사계약서 사본(공고문 사본 포함), 건설업등록증, 사업자 등록증등
- 2. 준공계 사본(준공관련 서류 포함)
- 3.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
- 4. 통장사본

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

(단위 : 원)

	사 업 계 획 사 업 집 행					
사 업 명	①	2	3	4	1)-3	비고
	지원금 교부액	자체 부담액	지원금 집행액	자체 부담액		
총 계						

「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논산시장 귀하

구비서류

- 1. 지출결의서(지출증빙서류) 사본
- 2. 세금계산서 사본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 (발췌)

■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■「지방재정법」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-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 -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 - ③ 삭제 <2013. 7. 16.>

■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